

『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6월 10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6월 19일

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「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의 포괄적인 관리·운영을 가능하게 하고, 이용시간 및 휴관일,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선산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의 이용시간, 휴관일 규정 신설
- 선산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및 생활관 사용료 규정 신설

라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「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의 포괄적인 관리·운영을 가능하게 하고, 이용시간 및 휴관일,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선산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의 이용시간, 휴관일, 사용료와 생활관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이 신축됨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시간, 휴관일, 사용료 등 「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하여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포괄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